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의무화 및 정기회 개최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95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국외 확산 및 국어와 연계한 한국문화 교육 신설(안 제6조)	2
2.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안 제19조의2)	4
※ 참고자료	
1. 세종학당 현황	8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나. 제 출 일 : 2025. 9. 18.

다. 회부연월일 :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6호 및 제19조의2 제6항 등).

Ⅲ. 검토의견

1.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국외 확산 및 국어와 연계한 한국문화 교육 신설(안 제6조)

가. 개정안 요지

-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국외 확산 및 국어와 연계한 한국문화 교육 신설(안 제6조제3항제6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어의 국외 <u>보급</u> 에 관한 사항	6. ----- <u>보급·확산과 국어와 연계한 한국문화 교육</u> ----- -----
7. ~ 12. (생략)	7. ~ 12.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시 ‘국어의 국외 확산과 국어와 연계한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세종학당을 통해 해외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관련 내용이 제4차 국어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4차 국어발전기본계획 내 포함된 사항>	
○ 국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내실화(추진과제 4-2)	
① 한국어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지원 강화	
②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품질 제고	
③ 한국어 저변확대를 위한 학습지원 다각화	
④ 현지 수요 맞춤형 문화교류 확대	

2.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안 제19조의2)

가. 개정안 요지

-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기회를 연 2회 이상 의무 개최 하도록 규정(안 제19조의2제6항 및 제7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 ----- --- <u>대통령령으로</u> ----- ----- ----- ----- ----- ----- <u>두어</u> <u>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설></u> <u>⑦ ~ ⑩ (생략)</u>	<u>⑦ 제6항에 따른 세종학당정책</u> <u>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u> <u>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u> <u>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u> <u>야 한다.</u> <u>⑧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1</u> <u>0항까지와 같음)</u>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세종학당 사업 추진을 위해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재량사항으로 법적 기속력이 낮은 상황임.
- 세종학당정책협의회는 현재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회를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문체부 1차관	
- 위원 : (정부)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체부 문화정책관 (민간)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 사람 (임기 2년)	
- 간사 : 문체부 국어정책과장	

- 최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 기능의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운영이 필요시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 협의회의 회의를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회 개최를 의무화함을 통해,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세종학당 관련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동 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 내용은 세종학당 관련 사항¹⁾으로 한정하고 있

1) ① 한국어 국외 보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처간 의견수렴을 통해 매년 세종학당 운영계획 수립, ② 세종학당 사업 추진을 위한 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협의 및 공동기획, ③ 관

으며, 유사한 회의²⁾가 타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바 정기회의 의무개최를 연 1회로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나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런 통계 구축 등 기타 세종학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외교부는 '19년부터 '해외 한국어·한국학 진흥 관계부처 실무협의회'를 매년 1회 개최 중/ 외교부, 문체부, 교육부, 국립국어원, 국립국제교육원, 세종학당재단, 재외동포청, 한국한중양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참석

참고 1

세종학당 현황' 25.10월 기준)

대륙	거점·일반·협업형 세종학당(수)	소계	문화원 세종학당(수)	소계	교육원 세종학당(수)	소계	합계
아시아	네팔(1), 대한민국(1), 동티모르(1), 라오스(2), 말레이시아(3), 몽골(4) 미얀마(1), 바레인(1), 방글라데시(1), 베트남(19), 사우디아라비아(1), 아랍에미리트(3), 아제르바이잔(1), 요르단(1), 우즈베키스탄(8), 이란(1), 인도(6), 인도네시아(8), 중국(18), 카자흐스탄(2), 캄보디아(5), 쿠웨이트(1), 키르기스스탄(4), 타지키스탄(2), 태국(4), 투르크메니스탄(1), 파키스탄(1), 팔레스타인(1), 필리핀(8)	110	베트남(1), 아랍에미리트(1), 인도(1), 인도네시아(1), 일본(2), 중국(3), 카자흐스탄(1), 태국(1), 필리핀(1)	12	베트남(1), 우즈베키스탄(1), 일본(14), 카자흐스탄(1), 키르기스스탄(1), 태국(1)	19	30개국 141개소 (56%)
유럽	독일(4), 라트비아(1), 러시아(3), 루마니아(1), 룩셈부르크(1), 리투아니아(2), 벨기에(1), 불가리아(1), 세르비아(1), 스웨덴(1), 스페인(1), 슬로바키아(1), 슬로베니아(1), 아이슬란드(1), 에스토니아(1), 영국(2), 우크라이나(1), 이탈리아(1), 조지아(1), 체코(1), 크로아티아(3), 튀르키예(1), 포르투갈(1), 폴란드(2), 프랑스(3), 핀란드(1), 헝가리(3)	41	독일(1), 러시아(1), 벨기에(1), 스웨덴(1), 스페인(1), 영국(1), 오스트리아(1), 이탈리아(1), 튀르키예(1), 폴란드(1), 프랑스(1), 헝가리(1),	12	러시아(4), 영국(1)	5	28개국 58개소 (23%)
아메리카	멕시코(1), 미국(8), 브라질(3), 아이티(1), 에콰도르(1), 엘살바도르(1), 우루과이(1), 칠레(1), 캐나다(2), 콜롬비아(1), 쿠바(1), 페루(1),	22	멕시코(1), 미국(2), 브라질(1), 아르헨티나(1), 캐나다(1)	6	미국(3), 브라질(1), 파라과이(1)	5	14개국 33개소 (13%)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1), 말라위(1), 모로코(1), 보츠와나(1), 에스와티니(1), 우간다(1), 이집트(2), 케냐(1), 코트디부아르(1) 탄자니아(1), 튀니지(1),	12	나이지리아(1), 남아프리카공화국(1) 이집트(1)	3	-	-	13개국 15개소 (6%)
오세아니아	호주(2)	2	호주(1)	1	뉴질랜드(1), 호주(1)	2	2개국 5개소 (2%)
소 계	79개국 187개소		30개국 34개소		13개국 31개소		
총 계	87개국 252개소						